

행정자치부

주의요구

제 목 문화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횡성군, 양구군, 정선군

내 용

강원도 ○○○○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2015년도의 경우 3,979백만원(카드사업 3019, 기획사업888)과 2016년에는 3,500백원을 투입하여 시·군에 교부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및 제15의4와 「2013년도 문화이용권 사업지침」에 따르면 문화카드사업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⁹⁶⁾ 등에게 카드 1매당 5만원 한도(가구당 1매, 청소년 개인당 1매, 복지시설거주자 개인당 1매)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음반, 도서 등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사업이며

문화이용권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발급하여 사용하거나, 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 이용권을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가맹점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문화이용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55조, 제360조)에 따라 처

96)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피해 발생 시 해당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와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또한, 「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이용이 원칙이며, 시설측에서 일괄적으로 도서나 교구를 구매하여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개인 동의 획득 시 가능하나 가급적 지양)하고 있고,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부정 이용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1. 문화누리카드 부정 사용

황성군 ○○면 ○동 ○○로2길 000에 위치한 ○○○ 양로원(대표 : ○○○)에서는 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복지시설 이용지침에 따라 카드발급 신청서류, 카드 사용 증빙 내역서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이에 대한 성실히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2016. 9. 26. 황성군 ○○실과 ○○면사무소 업무담당자가 ○○○ 양로원을 방문하여 2015년과 2016년도 ○○○ 외 5인의 사용내역을 점검한 결과 사용내역 증비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지 않고 분실한 사실이 있다.

정선군의 경우 노인요양원에서 ○○○가 2016. 4. 17. 사망하였음에도, 그 다음날인 2016. 4. 18. 시설 대표가 대리로 5만원(크레파스, 색칠하기, 지능개발 숫자카드 등)을 결재한 사실이 있다.

원주시의 경우 ○○요양원에서 시설에서 일괄로 신청하여 관리하던 중 자녀에게 양도 하였으나 자녀가 카드 분실 후, 2016. 8. 15. 18시경에 타인이 원주 ○○○에서 영화 관람한 사실이 있다.

2. 문화누리카드 사용 관리 소홀

「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이용이 원칙이며, 시설측에서 일괄적으로 도서나 교구를 구매하여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개인 동의 획득시 가능하나 가급적 지양)하고 있음에도

황성군 등 3개 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시설대표에게 위탁하여 부적절하게 도서구입, 놀이카드, 퍼즐 구입 등을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시설측에서 도서 교구 등 구입 현황

시군	시설명	이름	생년 월일	사용일	사용 금액	사용처	사용 현황	비고 (건강)
○○	○○○양로 원	○○○		201605 09	49,800	○○○ 문고	시설위탁사용 (도서구입, 책을 읽어드림)	별세(2016.7월)
	○○○○노 인요양원	○○○		201607 03	50,000	○○○ 문구서점	시설위탁 사용 (퍼즐, 놀이도구 재료)	치매
		○○○		201607 03	50,000	"	"	치매
○○	○○○노인 요양원	○○○		201604 18	50,000	○○서점	시설위탁사용 (놀이카드, 동화책 등)	건강양호
		○○○		201604 18	50,000	"	"	치매, 준와상
		○○○		201604 18	50,000	"	"	치매, 준와상
		○○○		201604 18	50,000	"	"	별세(2016.4월)
	○○○○	○○○		201608 18	50,000	○○○ 문고	시설위탁사용 (색칠공부, 동화책 등)	거동이 어려움
	○○○○ 마을	○○○		201605 25	50,000	○○○ 문고	시설위탁사용 (색칠공부, 동화책 등)	와상
	○○의 집	○○○		201604 15	48,900	○○서점	시설위탁 사용 (동화책 등)	치매 양호
○○	○○의집	○○○		201505 02	50,000	○○서점	시설위탁 사용 (예비용 성경 구매)	휠체어 거동
		○○○		201505 02	50,000	"	"	휠체어 거동
		○○○		201505 02	50,000	"	"	별세 (2015.11월)

※ 자료구성 : 강원도 ○○○○과 작성

또한, 강원도 ○○○○과에서는 동 사업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 및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역별 사업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시·군 실태운영 및 교육·점검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운도지사는

시·군 문화카드 운영실태 점검 등을 전면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업무에 철저한 주의를 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수, 정선군수, 양구군수는

문화카드 금지 행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대표 등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등 조치하여 주시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업무에 철저한 주의를 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